

예산 비목	내 용
강사비	○ (재)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일반강사 3급 기준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자체 하향조정 가능 ○ 강사수당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. ○ <u>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강사비 지급 불가</u> ○ 반드시 강의 후에 강사비 지출, 계좌 이체만 허용. ○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 세율 8.8%(기타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 ※ 1회 지급액 125,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임.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 완료 ※ 강사료 지출에 따른 은행 이체 수수료는 자부담 집행원칙
교 육 재 료 비	○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소모성 물품·재료 구입비, 인쇄비 등 - 기관운영 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,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 - 학습자 수(강사 포함)의 100% 인정 ○ 인쇄 시 경인쇄 권장. 참석자 수 등 고려해 최소량 제작 ○ 학습인원 수에 따른 재료비 지출 시 명단 첨부
	<홍보비> ○ 사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비용: 현수막 등 ※ 홍보용품(기념품) 제작 및 방송, 인터넷 등 광고·선전 목적 지출 불가
예산편 성 불가항 목	○ “예비비”, “잡비”, “준비비”, “기타”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항목 ○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(자부담으로도 편성 불가) ▶ 사무실 운영 경비: 직원(회원) 급여, 사무실 임대료, 시설 유지비, 사무기기 구입비, 공공요금 등 ▶ 업무추진비: 급식비, 사례비, 접대비 등 * 단, 행사 식비는 자부담 편성 가능 ▶ 행사부대경비 : 경품, 기념품, 상품권, 단체복, 선물 구입비 등 ▶ 자산취득비(악기, 장비 등)